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신달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2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신달호 의원,

박주용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6조)
- 라. 자발적 협약 체결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

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
4.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체육시설, 식품업체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2025.10.1. 타법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025.10.1. 타법개정·시행)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11.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1회용 우산 비닐

「대구광역시 달성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안」

비용추계 미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대상 지원(안 제7조),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 사업(안 제8조)에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2. 미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2호)

3. 미침부 사유

- 안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 대상 지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현판·포상금 지급, 종량제봉투 배부, 다회용컵 세척·회수 인프라 지원 등이 있으며, 안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중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은 공공기관 내 카페에 다회용기 비치,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보급 등 다양함. 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 내용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지므로 향후 세부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지원사업 중 교육·홍보는 연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신 달 호 (☎ 2049)